

## 제천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50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년 3월 일  
제출자 : 제천시장

### 1. 제안이유

- 직업안정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과 실업대책 추진 필요
- 성공경제도시라는 시민피부에 체감되게 구인·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, 직업지도, 직업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현장 종합지원센터 필요

### 2. 주요내용

- 센터의 위치 (안 제2조)
  - 제천시 의림대로 6길 32(화산동)에 둠
- 업무(안 제3조)
  - 구인·구직자의 등록관리 및 취업알선,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
  -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사업, 일자리 네트워크 사업
  - 기타 일자리 및 실업대책에 대한 정책사업
- 운영(안 제4조)
  - 시 직영으로 운영함
  - 단,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케 할 수 있음
  - 위탁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음

### 3. 의안전문 : 불임

### 4. 기타참고 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나. 입법예고기간 : 2011. 2. 9 ~ 2011. 2. 28(20일간)
- 다. 2011년도 제3회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결과 : 수정가결

### 5. 관계법령 : 불임

- 첨 부 1. 의안전문 1부.  
2. 관련법령 1부.  
3.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.

## 제천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직업안정법」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취업알선과 실업대책을 위한 종합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천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치)** 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제천시 의 림대로 6길 32(화산동)에 둔다

**제3조(업무)** ① 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.

1. 구인·구직자의 등록관리 및 취업알선
2.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
3.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사업
4. 일자리 네트워크 사업
5. 기타 일자리 및 실업대책에 대한 정책사업

**제4조(운영)** ① 센터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운영한다. 다만,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케 할 수 있다.

②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

**제5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관계법령]

### 직업안정법

[시행 2010.7.5] [법률 제10339호, 2010.6.4 터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·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,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·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, 직업지도,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.

## 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
[일부개정 2008. 1. 4 조례 제827호]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9조(사무처리의 지원)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[타 자치단체조례]

### 청주시 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

[ 1998. 9.21 조례 제2013호 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편의시설 제공으로 근로자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주시인력관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센터는 청주시 상당구 수동 442의 9번지에 둔다.

제3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구인·구직자 등록관리 및 취업알선
2. 취업정보 제공
3. 상담실 운영
4. 실직자 쉼터 운영
5. 기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

제4조(운영) ①센터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케 할 수 있다.

②위탁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안산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

[ 2000.04.04 조례 제 911호 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과 실업대책을 위한 종합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취업정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운영)** 센터는 고용안정시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.

**제3조(업무 등)** ①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.

1. 구인개척

2. 구인·구직신청의 수리

3. 구인·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·직업지도 및 직업정보의 제공

4. 기타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 및 안내

②센터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의 반대급부를 징수할 수 없다.

**제4조(상담원의 배치)** 센터에서는 4명이하의 민간직업상담원(이하 "상담원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**제5조(상담원의 채용등)** ①상담원은 공개모집하여 채용되되,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1년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상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

2. 업무상 또는 업무 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

3. 본인의 사직의사가 있을 때

**제6조(상담원의 자격기준등)** ①상담원의 자격은 별표와 같다.

②상담원의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직업상담원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## 상담원의 자격(제6조제1항관련)

상담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직업안정법에 의한 구인·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·직업지도·직업정보의 제공업무에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2.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상담훈련과정 수료증 소지자
3.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
4. 초·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,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, 직업지도,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5. 기타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또는 실업대책 상담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
제천시 공고 제 2011 - 141

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11. 2 8

제 천 시 장

### 제천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## 1. 조례명 : 제천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## 2. 제정이유

- 직업안정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과 실업대책 추진 필요
- 성공경제도시라는 시민피부에 체감되게 구인·구직자에 대한 직업 소개, 직업지도, 직업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현장 종합지원센터 필요

#### 3. 주요내용

- 센터의 위치 (안 제2조)
  - 제천시에 둠
- 업무(안 제3조)
  - 구인·구직자의 등록관리 및 취업알선,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
  -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사업, 일자리 네트워크 사업
  - 기타 일자리 및 실업대책에 대한 정책사업
- 운영(안 제4조)
  - 시 직영으로 운영함
  - 단,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단체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케 할 수 있음
  - 위탁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음

#### 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1년 02월 28일 까지 제천시장(참조 일자리창출팀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641 - 5070, FAX 641 - 5079 담당자 : 변태수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- 기타 참고 사항 등

★일자리창출 팀장	경제과장					
변태수	03/01 함영득					

##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

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

1. 입법예고 조례명 : 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(안)
2. 공고번호 : 제천시 공고 제2011 - 141호
3. 공고기간 : 2011. 2. 9 - 2. 28(20일간)
4. 공고매체 :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(입법예고)
5. 공고내용 : 별도붙임
6. 공고결과
  - 가. 조회수 : 240명
  - 나. 의견제시자 : 없음

붙임 : 공고안 1부 (별지) 끝.